

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 운영규정

제 정 2012. 7.

개 정 2018. 12.

제1조 (명칭) 본 본부는 우송대학교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라 칭한다.(개정 2018.12.18)

제2조 (목적)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학생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된 학생복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, 학생 각자의 능력개발과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사업) 본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생상담(학생상담센터) : 개인·집단상담, 심리검사, 학생생활실태연구 및 학부모 만족도 활용 정책개발 등
2. 취업지원업무(학생경력개발센터) : 취업에 필요한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
3. 장애학생지원업무(장애학생지원센터) : 교수·학습지원, 상담지원, 편의시설 지원 등
4. 사회봉사단업무(사회봉사단) : 사회봉사단 운영,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
5. 기타 학생들의 자아성장, 심성개발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

제4조 (본부장)

- ① 본부는 본부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본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
제5조 (직제) 본부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)

- ① 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본부장을 포함하여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본부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 2. 주요 사업 및 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 3.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사항
 4. 그 밖에 본부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 (자문위원) 본부의 사업기획 및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

제8조 (운영세칙) 그 밖에 본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「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 운영규정」으로 개정(확대 개편)됨에 따라 「학생생활코칭센터 운영규정」은 폐지한다.